■ 저작권법 시행규칙 [별지 제33호서식] <개정 2023. 6. 13.>

등록부 등록사항 []변경 []경정 []말소 []말소회복 등록신청서

※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4일
①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		
② 제 호 (제 목)		
③ 종 류		
④ 등록사항 (발생일)	()	

신청인	⑤ 성 명 (법인명)	(한글) (영문)	(한자)	
	⑥ 국 적		⑦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⑧ 주 소			
	⑨ 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※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, 미기재시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	⑩ 전자우편 주소	
대리인	⑪ 성 명 (법인명)		⑫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⑬ 주 소			
	⑭ 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※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, 미기재시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	⑮ 전자우편 주소	

※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「저작권법」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「저작권법」 제5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

첨부서류	1. 등록사항의 변경·경정·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(이하 "변경등록등"이라 합니다)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(1건) 방문·우편: 3,000원 인 터 넷: 2,000원 등록면허세 (교육세 포함, 1건) 3,600원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작성요령

※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.

◆ 변경 등록: 등록 이후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록된 내용과 변경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으로서 저작물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.

◆ 경정 등록: 신청 당시 신청인의 착오 또는 과실로 등록 사항 중 일부가 잘못 등록되거나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거나 보충하기 위한 등록입니다.

◆ 말소 등록: 이미 등록한 사항을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등록입니다.

◆ 말소 회복 등록: 등록된 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등록입니다.

①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: 변경・경정・말소・말소회복하려는 등록번호와 그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, 동시에 여러 건에 대한 변경인 경우 열거하여 기재합니다.

②・③ 제호 및 종류: 등록된 저작물(실연・음반・방송, 데이터베이스)의 제호 및 종류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.

④ 등록사항: 변경・경정・말소・말소회복하려는 내용을 기재하고, 괄호 안에 사유 발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.

예) 주소이전: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0 → 경남 진주시 충의로 000(2016. 06. 22)

제호변경: 홍길동 → 신출귀몰 신 홍길동(2000.01.01)

⑤ 성명(법인명): 자연인은 그 실명,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, 개인사업체는 '<상호> 대표 OOO',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.

예) 자연인: 홍길동, 법인: 주식회사 활빈당, 개인사업체: 활빈당 대표 홍길동, 기타 단체: 활빈당

⑦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: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되,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신청방법

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, 우편 또는 인터넷(www.cros.or.kr)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등록사항의 변경 등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